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19번
- 제 출 자 : 문종철 의원(찬성자 13명)
- 제 출 일 : 2016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00년 4월 11일

### 2. 제안이유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유사시설인 자치구청의 구민회관과 비교할 때 사용료 감면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바, 새로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16. 4. 18 ~ 4. 22)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성 문화 센터 등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조례 제2조, 제4조)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과 그 외에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조례 제6조)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제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본 개정안은 안 제8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 입법취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유사시설인 자치구의 구민회관과 비교해 볼 때 사용료 감면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본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예산정책담당관) 연간 약 5천4백만원의 청소년시설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청소년 시설의 경우 운영자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대상 확대 및 이용활성화에 따라 향후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청소년시설의 재정 수입 감소의 여지가 있는 바 추후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산술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한 행사의 사용료	107,147	105,944	92,168	103,655	104,006	129,960

※ 산술평균 1년 사용료 × 감면율 = 107,147천원 × 50% = 53,574천원

<자료> 비용추계서

- 지난 해 조례 개정(2015.9.18.의결, 2015.10.8. 공포)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시설의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강습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바 있으며, 공익을 위한 행사나 어린이·청소년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감면범위와 형평을 맞추고(참고자료 ① 참조), 최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하는 추세에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와의 교감을 위한 행사(재롱잔치 등)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감면 규정은 사용자 편의 및 청소년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제8조제2항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13세 이상 55세 이하 10% 감면)이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30% 감면) 감면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별도의 항(제5항, 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상 이용료, 강습료 등이 포함되는 사용료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항을 신설하여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시설의 대관 사용료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정찬일

# 참고 자료

## ① 자치구별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현황

(2016. 3. 10. 현재)

자치구	관리 주체	사 용 료	감면조항
종 로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10,000원~30,000원 매 30분 초과시 25% 가산	•국가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감면 •경로우대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행사 50% 감면
중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1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국가, 공공 및 직능단체 주관의 공익을 위한 행사는 100% 감면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행사 50%감면
용 산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10,000원~3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감면
성 동 구	동주민센터	•2시간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100% 감면
광 진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5,000원~30,000원 초과시 30분마다 25% 가산	•국가, 공공 및 직능단체 주관의 공익을 위한 행사는 100% 감면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행사 50%감면
동 대 문 구	동주민센터	•2시간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100% 감면
중 랑 구	동주민센터	• 무료	-
성 북 구	동주민센터	•무료 이용 원칙이나 장수 필요시 2시간 30,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	-
강 북 구	동주민센터	•무료	-
도 봉 구	동주민센터	•2시간 25,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100% 감면 •장애인, 경로우대자, 청소년 등 50% 감면
노 원 구	동주민센터	•2시간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 가산	•주민들의 각종모임 및 회의 또는 전시회 등 교양활동, 친목모임 등은 100% 감면
은 평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5,000원~15,000원 매 30분 초과시 50%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100% 감면 •경로우대자, 청소년, 어린이 대상 행사는 50% 감면
서 대 문 구	동주민센터	•2시간 30,000원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 관내 직능단체 등 회의는 100% 감면 •만 65세 이상 노인,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50% 감면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30% 감면

자치구	관리 주체	사 용 료	감면조항
마 포 구	동주민센터	•1시간당 1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정 등 100% 감면
양 천 구	동주민센터	•3시간당 500원~20,000원 •1시간 초과 시 20%가산	•국가유공자,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단체는 100% 감면
강 서 구	동주민센터	•3시간당 20,000원~40,000원 •30분 초과시 25% 가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 감면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사용 시 50% 감면
구 로 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무료	
금 천 구	동주민센터	•1시간당 10,000원~30,000원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주관 무료 공익 행사는 100% 감면 •경로우대자, 어린이 50% 감면
영 등 포 구	동주민센터	•1시간당 10,000원 1시간 초과시 50%가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소년소녀가장 등 100% 감면
동 작 구	동주민센터	•1시간당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100% 감면 •경로우대자 50%감면
관 악 구	동주민센터	•시간당 20,000원	•국가, 공공단체 주관 및 공익을 위한 행사 100% 감면
서 초 구	동주민센터	•무료	
강 남 구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2시간당 15,000원~350,000원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평일의 30% 가산)	•공익목적 행사 100% 감면
송 파 구	동주민센터	•2시간당 10,000원~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00% 감면 •경로우대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0% 감면
강 동 구	동주민센터	•3시간당 500원~20,000원 (초과 시 20%가산)	•국가유공자,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100%감면

## ②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조례〔별표 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 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